



제258회 임시회
2007. 3. 22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전문위원 검토보고

□ 발 의 자 : 임 현 의원의 9인

□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07년 3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07년 3월 12일

□ 제안 이유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정시행(제정일 2005.5.31, 시행일 2005.12.1)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,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,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(안 제3조)
- 나.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- 다.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(안 제8조)
- 라.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(안 제9조)

□ 검토 의견

-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보훈대상별로 제정된 법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7종의 개별법¹⁾에 의해 수행되었으나, 2005년 5월 31일 이를 통합한 「국가보훈기본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규정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다만, 본 조례 제정에 참고코자 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및 제8조(단체지원)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단체²⁾의 지원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붙임 :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1)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③고엽제후유의 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④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⑤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⑥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⑦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
2) ①상이군경회 충북지부 ②전몰군경유족회 충북지부 ③전몰군경미망인회 충북지부 ④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⑤광복회 충북도지부 ⑥고엽제전우회 충북도지부